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장관 귀하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대학교)의 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81423-232: 2003. 2.25.)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3. 학교 관련	1	23,480백만원	1	별지 제1의 2호서식
4. 부속병원 관련	-	-	-	해당사항 없음.
계	1	23,480백만원	1	

- 붙임 : 1.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명지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2년 5월 일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 사 유 윤 산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47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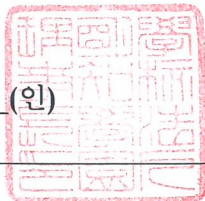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2년 5월 일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 사 장 현 세 용 (인)



피감사 기관장

2022년 5월 일

명지대학교

총 장 유 병 진 (인)



(별지 제1의1호 서식)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지적사항 없음.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현 세 용



직인

(사인)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별지 제1의2호 서식)

명지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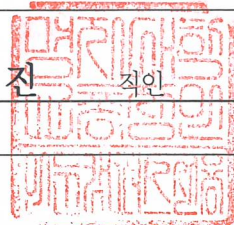
(회계연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명지대학교는 유휴부지등의 매각계약과 관련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6조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582-3등 15필지의 잔금 21,760백만원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1외 잔금 1,720백만원의 입금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p>	<p>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부동산처분금지처분 신청 사건 계류중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637)2. 부동산처분금지처분 등기 완료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말소 청구를 위한 본안 소송 진행 예정

피감사기관장

명지대학교 총장 유 병 진



(교비회계)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2021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나,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수익사업은 자본잠식 및 다수의 소송으로 인해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 지적 사항 없음.

2022. 5. .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 사 유윤산 

감 사 _____ 인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명지학원 사무국장

성 명 유재훈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명지대학교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아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명지대학교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지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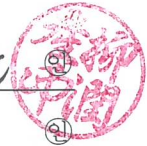
명지대학교는 유휴부지등의 매각계약과 관련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6조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582-3등 15필지의 잔금 21,760백만원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1외 잔금 1,720백만원의 입금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2022. 5. .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 사 유운산

감 사 _____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사무지원처장

성 명 주성익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